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통신판매중개자의 대금지급기한 신설 등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

-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23호)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20호)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22호)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67호)
- 이현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46호)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49호)
- 이진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41호)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73호)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61호)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49호)
- 윤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77호)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34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통신판매중개자의 대금지급기한 신설 >

- 윤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74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개 요	1
1.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523호)	1
2.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620호)	3
3.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622호)	4
4.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667호)	6
5. 이현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746호)	8
6.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849호)	10
7. 이건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941호)	12
8.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973호)	14
9.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3161호)	15
10.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349호)	16
11. 윤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577호)	17
12.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634호)	19
13. 윤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3574호)	20

Ⅱ. 검토의견	22
1. 입법방식	22
2. 대금지급기한 신설	26
3.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32

I. 개 요

1.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안(「전자상거래법」, 의안번호 제220252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천준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8. 2.
- (3) 회 부 일 : 2024. 8. 5.

나. 제안이유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대금 정산 주기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체의 직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중개판매의 정산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런 이유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정산주기는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임.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티몬-위메프는 정산주기를 최대 70일까지 늦춰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을 사주의 이익을 위해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긴 정산주기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 판매자의 자금을 무이자

활용하는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금을 전용할 우려가 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처럼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함.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를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또는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하도록 하여 정산주기를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2.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안(「전자상거래법」, 의안번호 제220262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송언석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8. 7.
- (3) 회 부 일 : 2024. 8. 8.

나.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의적인 대금 정산 주기와 부적절한 판매대금 관리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판매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함.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를 구매를 확정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또한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

3.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안(「전자상거래법」, 의안번호 제220262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정현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8. 7.
- (3) 회 부 일 : 2024. 8. 8.

나. 제안이유

최근 벌어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대금지급 기간까지 유예된 정산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음. 대기업 유통사는 결제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등)하는데 반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기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용역 등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자들의 경우 상품의 판매가 완료되었음에도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입고 처리 지연으로 인해 최장 2달 이상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빈번함. 쿠팡·위메프·티몬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보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등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정산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정산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이커머스 중개업체가 정산

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받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제5항 신설).

4.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안(「전자상거래법」, 의안번호 제220266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고동진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8. 8.
- (3) 회 부 일 : 2024. 8. 9.

나. 제안이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최고치인 227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2018년 114조원에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임.

온라인상품시장의 매출이 급신장세를 기록하는 반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용역 등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자는 상품의 판매가 완료되었음에도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입고 처리 지연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쿠팡·위메프·티몬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보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등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정산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역시 긴 정산주기가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규모사이버몰의 운영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및 제32조).

5.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안(「전자상거래법」, 의안번호 제220274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8. 12.
- (3) 회 부 일 : 2024. 8. 13.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 등 중개자와 판매자 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업계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정산을 하지 못하면서 통신판매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할 재화등의 대금을 자의적으로 융통하여 사업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 보유와 관련하여 이를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신탁하고,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통신판매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제20조의5 신설 등).

6.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안(「전자상거래법」, 의안번호 제220284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8. 14.
- (3) 회 부 일 : 2024. 8. 16.

나. 제안이유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각각 40일과 60일로 명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간 거래정산금 지급기한과 거래정산금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됨. 이에 따라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거래정산금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적 미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음.

미정산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6만명에 이르는 입점 판매자들의 연쇄 도산을 부추기고 있으며, 5,6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긴급자금 투입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거래정산금 지급기한을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구매를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거래정산금을 은행에 예치·신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미정산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4, 제20조의5 신설 등).

7. 이견태의원 대표발의안(「전자상거래법」, 의안번호 제220294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견태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8. 19.
- (3) 회 부 일 : 2024. 8. 20.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통신중개업자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극심한 손해가 예상되며, 두 기업의 회생 신청으로 영세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사업자는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을 정산받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40일 이내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비하여 영세 소상공인 등과 소비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재화등

의 대금의 정산 주기를 소비자가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 한 날부터 20 일 이내로 설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는 한편,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하는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등).

8.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전자상거래법」, 의안번호 제220297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8. 20.
- (3) 회 부 일 : 2024. 8. 21.

나. 제안이유

최근 이커머스(E-Commerce)에서 정산이 지연되어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태가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로 지급되는 거래대금의 정산 주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거래대금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래대금 지급이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는 지급되도록 하는 등 거래대금 지급의무를 명문화하고, 에스프로 업체가 거래대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9.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안(「전자상거래법」, 의안번호 제220316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용민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8. 23.
- (3) 회 부 일 : 2024. 8. 26.

나. 제안이유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기업 유통사는 정산 주기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산 기한이나 판매 대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과 판매 대금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음.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를 상품을 수령 후 구매를 확정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0.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전자상거래법」, 의안번호 제220334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8. 29.
- (3) 회 부 일 : 2024. 8. 30.

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대금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지 않아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대금 관련 예치의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예치의무를 도입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11.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안(「전자상거래법」, 의안번호 제220357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운영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9. 3.
- (3) 회 부 일 : 2024. 9. 4.

나.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및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판매대금의 유용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자기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대금 정산 주기를 설정하고 판매대금의 수취와 지급 시기의 차이를 이용한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임.

이에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도 에스프로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의 대금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별도 관리하고 별도관리되는 판매대금 등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타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또한,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사업자에게 별도관리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부여하고, 적법하게 청약을 철회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취소한 소비자에도 별도관리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부여하여

통신판매 중개거래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중개 의뢰 사업자 및 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4 신설 등).

12.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안(「전자상거래법」, 의안번호 제220363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9인
- (2) 제 안 일 : 2024. 9. 4.
- (3) 회 부 일 : 2024. 9. 5.

나. 제안이유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주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온라인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화 등의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화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재화대금을 별도관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재화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설 규정에 따른 중복규제는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0호,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제24조제2항).

13. 윤영석의원 대표발의안(「대규모유통업법」, 의안번호 제220357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9. 3.
- (3) 회 부 일 : 2024. 9. 4.

나. 제안이유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2023년 기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17년에 비해 2.5배 가까이 급증한 23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디지털 경제의 속성장 네트워크 효과가 작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위메프 사태 등이 발생하였음.

특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입점 판매자)들의 판매대금을 다른 기업 매입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위메프 사태는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함을 방증함.

그러나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중개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표준계약서, 상생협약과 같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판촉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보복조치 등의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된 날부터 5일 내에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의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중소 기업, 소상공인 등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려 함(안 제2조의2 및 제8조의2).

II. 검토의견

1. 입법방식

□ 지난 7월 티몬과 위메프가 여행사 등 플랫폼 입점업체들에게 판매대금을 미정산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판매자들은 상품판매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고, 환불마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확산되었음.

○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입점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의 총액은 1조 3천억원으로, 피해업체 수는 48,124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음¹⁾.

○ 이번 사태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을 임의로 설정한 정산기간 동안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천준호의원안, 송언석의원안, 박정현의원안, 고동진의원안, 이현승의원안, 김현정의원안, 이견태의원안, 박성훈의원안, 김용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 8. 25., 위메프·티몬 사태 미정산 피해 현황점검, e커머스 제도개선 방안 조만간 마련)

민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이강일의
 원안²⁾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에, 윤영석의원안은 「대규모유통업에
 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
 다)에 판매대금의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발의하였음.

<각 개정안 주요 내용>

발의일자	발의의원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4. 8. 2.	천준호의원	- 정산기한 도입(구매확정일로부터 7일 또는 배송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24. 8. 7.	송언석의원	- 정산기한 도입(구매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24. 8. 7.	박정현의원	- 정산기한 도입(구매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24. 8. 8.	고동진의원	- 정산기한 도입(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24. 8. 12.	이현승의원	- 정산기한 도입(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24. 8. 14.	김현정의원	- 정산기한 도입(구매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24. 8. 19.	이건태의원	- 정산기한 도입(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24. 8. 20.	박성훈의원	- 정산기한 도입(수령일부터 7일 이내) -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24. 8. 23.	김용민의원	- 정산기한 도입(구매확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24. 8. 29.	백혜련의원	-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24. 9. 3.	윤영석의원	-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831호, 이강일의원 대표 발의)에서도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등 다른 내용도 함께 담고 있어서 검토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함.

발의일자	발의의원	주요내용
24. 9. 4.	임미애의원	- 정산기한 도입(구매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24. 9. 10.	이강일의원	- 정산기한 도입(구매확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 9. 3.	윤영석의원	- 통신판매중개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 - 정산기한 도입(구매확정일로부터 5일 또는 배송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 개정안들이 신설하고자 하는 정산기한 도입,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를 규정하고자 하는 각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B2C)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어³⁾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소비자 권익의 보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규율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여 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써⁴⁾⁵⁾,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법 적용 대상은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에 사용

자 등 사이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관련 분쟁 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규율 내용으로 하고 있음⁶⁾⁷⁾.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관계(B2C)를 규율하는 법으로, 사업자간 거래관계(B2B)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오프라인 소매업자의 정산 주기를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별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라는 입장임.

□ 개정안의 내용을 어느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는 각 법률의 제정 목적, 적용 대상, 법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만 해당됨.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억원 이상인 자
 - 나.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 6) 상품대금 감액 금지(제7조),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제8조),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제9조), 상품 반품 금지(제10조),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제11조),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제12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제13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제14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제14조의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제15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제15조의2), 매장설비비용의 보상(제16조) 등
- 7) 참고로 윤영석의원안(「대규모유통업법」, 의안번호 제2203574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하는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보도록 하는 의제조항을 규정함. 다만,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전체가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내용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통신판매중개자의 대금지급기한 신설

□ 각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임(김용민의원안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4항 신설, 천준호·박정현의원안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4항·제5항 신설 또는 송언석·고동진·이현승·김현정·이건태·박성훈·임미애의원안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신설, 윤영석의원안 대규모유통업법제8조의2신설)⁸⁾.

□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납품업자로부터 납품·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⁹⁾,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는 연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고시하고 있음¹⁰⁾.

8) 개정안의 조문대비표는 38쪽에 첨부함.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I.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상품판매대금등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

- 하지만,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 판매대금의 지급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각 업체별로 구매확정일로부터 1영업일에서 60일까지 다양하게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¹¹⁾.

<주요 업체 정산주기 현황>

온라인 플랫폼	정산주기
쿠팡	▶ 주정산 : 익일부터 15일 이내 정산 - 주정산은 70% 정산 - 정산 소비자 반품, 환불, 하자에 의한 청약철회 등으로 30%는 익월 1일 정산 ▶ 월정산 : 매월 1일~말일 기간 산정, 익월 15일 정산 ▶ 빠른정산 : 구매확정일 + 다음날 오전 10시 90% 쿠팡 셀러 체크카드 형태로 정산
카카오	▶ 구매확정일 + 3영업일
네이버	▶ 일반정산 : 구매확정일 + 1영업일 정산(결제 발생일로부터 평균 약 9일) ▶ 빠른정산 : 집화완료일 + 1영업일 정산(결제 발생일로부터 평균 약 3일) * 빠른정산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공됨(별도 추가 이용료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11번가	▶ 판매금액은 구매확정일 + 2영업일 정산 ▶ 구매 회원이 직접 구매확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배송완료일로부터 7일 경과 후 8일차에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 - 단, 배송완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배송 추적 상품) 상품을 발송 처리한 날로부터 29일차에 자동으로 구매 확정
무신사	▶ 매월 말 판매 마감 후 익월 10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판매대금 정산 * 소비자의 '구매확정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 판매 마감 후 판매대금 정산
G마켓·옥션	▶ 일반정산: 1) 구매결정/반품완료/교환완료 + 1영업일 정산 2) 자동구매결정: 배송완료일 + 8일 3) 배송추적불가시 발송처리일부부터 국내배송은 +28일, 해외배송은 +45일 ▶ 빠른정산: 스마일배송 출고 + 1영업일 - 90%가 정산되며, 10%는 소비자 피해 시 환불보증금 보유하며 10일 후 즉시 정산
인터파크	▶ 구매확정(고객이 수동, 자동) -> S-Money 적립(익영업일) -> 출금(매주 월요일, 전주 토~금일) -> 판매자 입금 ▶ 구매확정 기준으로 일정산(S-Money 적립*)하여 주단위 출금 * S-Money 적립(정산) : 구매확정 후 익 영업일 적립(정산) ▶ 출금 방식 : 주 1회 (매주 '토요일~금요일' S-Money 출금 신청 건에 대하여 차주 월요일에 일괄 지급)

품판매대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11)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2024. 9. 23.)에 따르면, 공정위의 28개 업체 대상 실태조사 결과, 14개 업체가 청약철회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일 정산하고 있으며, 이 중 13개 업체가 5일 이내 정산 완료하고 있음. 또한, 28개 오픈마켓 플랫폼의 평균 정산주기(산술평균)는 구매확정일로부터 약 22.9일임.

온라인 플랫폼	정산주기
롯데쇼핑 (롯데ON)	▶ 정산프로세스 1.고객에게 상품이 배송완료되는 시점 이후 고객은 구매확정을 할 수 있고, 구매확정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8일차(자연일)에 구매확정 * 8일까지 소요되는 이유 : 전자상거래법상 고객의 단순 변심 청약철회의 무기간(7일)을 준수한 기간 2.구매확정일+1영업일 판매자 정산예치금으로 적립 3.정산예치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판매자(셀러)가 언제든지 출금신청 가능하고 1영업일 후 정산 ▶ 셀러는 구매확정일+1영업일 즉, 9일차에 판매자 예치금으로 입금하면 판매자는 10일차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금신청 가능 법정기일 준수 및 정산(수수료 등 계산) 작업을 한 후 최대 3일 소요되는 정산프로세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화등을 판매한 대금을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사업자금 확보 및 유통이 어려워 경영상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들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금(김현정의원안의 경우에는 거래정산금)을 특정 기한 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임.

○ 또한, 그 기한을 초과하여 대금(거래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고동진의원안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를 지급하도록 하고, 재화등의 대금(거래정산금) 또는 이자(지연배상금)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는

내용¹²⁾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별로 정산주기가 상이한 상황에서 대금 정산지연에 따른 이용사업자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각 개정안들은 정산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3영업일에서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산기한을 얼마로 정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정산기한이 짧은 업체들이 오히려 법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정산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¹³⁾, 업종별 특성¹⁴⁾, 정산주기 단축에 따른 추가인력 투입의 부담¹⁵⁾, 장기적으로 자본력이 있는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¹⁶⁾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 천준호의원안과 박정현의원안은 시정조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행법의 시정조치 대상에 제20조가 들어가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시정조치의 대상이 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3)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 의무기한을 신설(60일 이내 지급)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 당시 이러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었고(2021년 2월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실제로 쿠팡과 마켓컬리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 이후 정산기한을 늘린 바 있음(쿠팡은 최대 정산기한이 50일이었으나 2023년 1월부터 60일로 변경하였고, 마켓컬리는 올해부터 최대 정산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함)(쿠팡·마켓컬리의 '60일 정산기한'은 정당한가?, KBS, 2024. 8. 28. 보도)

14) 숙박·여행·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 구매 확정일이 아닌 실제 공급일을 정산기준일로 설정

15) 온라인 유통업계 의견(중소 e커머스의 경우 월 정산의 경우보다 주 정산의 경우 4배 이상의 인력 추가 투입 필요)

16) '정산기한 단축' 반길 줄 알았는데...영세 상인 딜레마(2024. 9. 3. 뉴스1)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되, 숙박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 소비자가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정산기한 직전 3영업일까지 판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함께 제시하였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한 벤처 스타트업을 포함할 경우 유동성 위축, 추가비용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시장지배적 영향력이 큰 일부 e커머스사로 한정하여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하는 입장을 제시함¹⁷⁾.

○ 산업통산자원부는 정부가 마련중인 개정법률안과 중복 우려가 있거나,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 성장 토대를 무너뜨리는 규제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금 정산 기일을 단축할 필요가 있고(14일), 재화와 다르게 숙박·여행·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

17) 정산기준일을 구매확정일로 할 경우 매일 정산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므로 월단위, 주단위로 정산 중인 유통업체에 대규모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제도 개편 시 월 단위 정산 불가능), 대규모 e커머스는 자체적으로 30일 이내 정산 체계를 이미 운영 중이므로 제도 준수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임(참고로 EU도 30일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는 용역의 경우에는 실제 공급일을 정산기준일로 정하는 등의
예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 각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등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박정현의원안 제8조의2 신설, 김용민의원안 제20조제5항 신설, 백혜련·윤영석의원안 제20조의4 신설, 송언석·이현승·김현정·이건태·박성훈·임미애의원안 제20조의5 신설)¹⁸⁾.

□ 전자상거래법은 선지급식 통신판매¹⁹⁾를 할 때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 에스프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⁰⁾.

○ 하지만, 동 조항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티몬·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거래, 배송이 필요 없는 거래 등의 경우에도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²¹⁾.

18) 개정안의 조문대비표는 59쪽에 첨부함.

19)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를 말함 (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1항)

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정안들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금(김현정의원안의 경우에는 거래정산금) 전부 또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관리기관을 통하여 예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판매대금은 입점업체가 받아야 할 금액을 플랫폼이 일시적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③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소비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자와 행하는 거래를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거래로 고시합니다.

- 다 음 -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 전액을 별도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²²⁾,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제3의 기관에 별도관리할 경우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스타트업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²³⁾도 있음.

- 한편, 대다수의 개정안들은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이 안전한 방법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별도관리하는 대금의 상계 또는 압류하거나 양도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한 경우 등에는 별도관리하는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인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관리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박정현의원안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명시하고 있는데,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법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판매대금 별도관리 위반 시 제재조치로서 시정조치 외에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2) 지난 9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입점업체 측 참석자의 이와 같은 의견이 있었음

23) 지난 9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플랫폼 측 참석자의 이와 같은 의견이 있었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선불업자는 별도관리하지 아니하는 선불충전금과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선불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선불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선불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불충전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⑩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이용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⑪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⑫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⑬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하였는데,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경우 판매대금의 50%를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별도관리되는 판매대금을 상계·압류하거나, 양도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의 파산 시 입점업체의 우선 변제권을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제시하였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한 벤처 스타트업을 포함할 경우 유동성 위축, 추가비용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시장지배적 영향력이 큰 일부 e커머스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대규모 유통업자, 금융기관 등과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²⁴⁾.

문 의 처

02)6788-5114

1. 대금지급기한 신설 관련 조문대비표

24)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서는 판매대금 별도관리의 규정이 없고, 정산기한과 별도관리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함. 특히 별도관리 비용(수수료 등)을 중개거래액의 0.5~1%로 가정할 때 매출액의 5~10%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금융권의 지급준비금(7~10%)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천준호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또는 배송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⑤ 통신판매중개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u>

송언석의원안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 등의 지급)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 <u>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u> <u>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또는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 -----

송언석의원안	
현행	개정안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u>제22조제1항</u>,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생략) ② ~ ④ (생략)	----- ----- -----. 1. ----- ----- ----- ----- ----- ----- ----- -----<u>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2조제1항</u>----- -----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박정현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재화등의 대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⑤ 제4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연체이자율 및 이자 지급에 관하여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통판매마감일”은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하는 날”로 본다.</u>
제34조(과징금) ①·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34조(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이 경우 제20조제4항 및 제5

박정현의원안	
현행	개정안
1. ~ 4. (생략) ④ (생략)	<u>항을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고동진의원안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0조의4(재화등의 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판매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 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 <u>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재화등의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u> <u>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등의 판매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 ----- ----- -----

[illegible]

이헌승의원안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 등의 지급)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또는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이헌승의원안	
현행	개정안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u>제22조제1항</u>,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생략) ② ~ ④ (생략)	----- ----- ----- ----- -----. 1. ----- ----- ----- ----- ----- ----- ----- ----- <u>제20조의4, 제22조제1항</u>----- -----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김현정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 ----- ----- ----- ----- ----- -----말한다(제4호에 따른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통신판매를 대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4.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공급하거나

김현정의원안	
현행	개정안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u>허락하거나</u>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u>알선하는</u> 행위를 말한다. 5.·6. (생략) <u><신설></u>	<u>거래할</u>----- ----- -----<u>제공하거나</u>----- ----- -----<u>알선 또는 대행하는</u>----- -----. 5.·6. (현행과 같음) <u>제20조의4(거래정산금 등의 지급)</u> ① <u>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아 판매한 재화등의 거래정산금(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입점 받은 재화등의 판매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수수료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 ② <u>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거래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u>

김현정의원안	
현행	개정안
	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정산금 또는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 ----- ----- -----.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1. ----- ----- ----- ----- -----

김현정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u>제22조제1항</u> ,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 ----- <u>제20조의4, 제20조의5</u> <u>제1항, 제22조제1항</u> ----- ----- -----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이 건 태 의 원 안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 등의 지급)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또는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

박성훈의원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4(거래대금 지급의무) ① <u>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재화등의 거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 ② <u>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u> ③ <u>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 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재화등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u>

김용민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수령 후 구매를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

임미애의원안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 등의 지급)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또는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

임미애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u>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u>,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생 략) ② ~ ④ (생 략)	----- ----- ----- -----. 1. ----- ----- ----- ----- ----- ----- -----<u>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u>-----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운영석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 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 -----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
<u><신설></u>	제8조의2(통신판매중개업자의 대금 지급 시기)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재화 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된 날부터 5일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이 완료된

운영석의원안	
현행	개정안
	<u>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u> <u>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 따른 재화 등의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제8조제3항을 적용한다.</u> <u>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u>

2.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관련 조문대비표

송언석의원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5(재화등의 대금 보호)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송언석의원안	
현행	개정안
	<u>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⑥ <u>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u>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u> 2. <u>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u> 3. <u>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4. <u>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u> 5.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 ⑦ <u>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

송언석의원안	
현행	개정안
	<u>통신판매중개자들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u> <u>⑧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u> <u>⑨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이 제6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u> <u>1.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u>

송언석의원안	
현행	개정안
	2. <u>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정보</u> 3. <u>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⑩ <u>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u> ⑪ <u>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u>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 ----- -----

[illegible]

박정현의원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판매대금의 보호)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는 판매대금(통신판매중개자등이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등을 판매한 대가로 소비자에게 수취한 금액으로서 환급, 수수료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별도관리하지 아니하는 판매대금과 제

박정현의원안	
현행	개정안
	<u>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판매대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직접 운용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u> <u>④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u> <u>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⑥ 통신판매중개자등은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⑦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박정현의원안	
현행	개정안
	<u>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u> <u>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u> <u>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u> <u>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 <u>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등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u> <u>⑨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u>

박정현의원안	
현행	개정안
	<u>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판매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u> <u>⑩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등은 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u> <u>1. 판매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u> <u>2.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u> <u>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판매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u>⑪ 판매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 그 청구권의 양</u>

박정현의원안	
현행	개정안
	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u>통신판매중개자등이 판매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u> <u>⑫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판매대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u> <u>⑬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판매대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판매대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판매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 ----- ----- -----.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 ----- 제8조, 제8조의2, 제9조----- -----

박정현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 -----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이헌승의원안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0조의5(재화등의 대금 보호)</u> ① <u>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u> ③ <u>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u> ④ <u>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⑤ <u>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u>

이헌승의원안	
현행	개정안
	<u>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⑥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u> <u>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u> <u>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u> <u>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 <u>⑦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를 포함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u>

이헌승의원안	
현행	개정안
	<u>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u> <u>⑧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u> <u>⑨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이 제6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u> <u>1.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u> <u>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에</u>

이헌승의원안	
현행	개정안
	<u>관한 정보</u>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⑩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⑪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김현정의원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5(거래정산금의 보호) ① <u>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정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거래정산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u>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u>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거래정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u> ③ <u>제1항에 따라 거래정산금을 별도관리하는 거래정산금관리기관과 거래정산금을 직접 운용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u>

김현정의원안	
현행	개정안
	④ <u>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거래정산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u> ⑤ <u>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⑥ <u>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거래정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⑦ <u>거래정산금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거래정산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u>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u>

김현정의원안	
현행	개정안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거래정산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거래정산금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거래정산금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래정산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

김현정의원안	
현행	개정안
	여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⑩ 거래정산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거래정산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거래정산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⑪ 거래정산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김현정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u>변제받을 권리가 있다.</u> <u>⑫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거래정산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u> <u>⑬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거래정산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거래정산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거래정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 ----- ----- ----- -----.
	1. ----- ----- ----- ----- ----- ----- -----

김현정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1항, 제22조제1항----- ----- -----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이 건 태 의 원 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20조의5(재화등의 대금의 보호)</u> ① <u>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u> <u>1. 신탁</u> <u>2. 예치</u> <u>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u> ② <u>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재화등의 대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u> ③ <u>제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u> ④ <u>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u>

이 건 태 의 원 안	
현 행	개 정 안
	<u>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u> ⑤ <u>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로관리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⑥ <u>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로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⑦ <u>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u> <u>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u> <u>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u>

이 건 태 의 원 안	
현 행	개 정 안
	<u>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4. <u>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u> 5.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 ⑧ <u>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u> ⑨ <u>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여야 한다.</u> ⑩ <u>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u>

이 건 태 의 원 안	
현 행	개 정 안
	<u>이 제7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u> <u>1.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u> <u>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정보</u> <u>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u>⑪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u> <u>⑫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관리 상황</u>

이 건 태 의 원 안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⑬ <u>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재화 등의 대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재화 등의 대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재화등의 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 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 ----- ----- ----- ----- ----- 1. ----- ----- ----- ----- ----- ----- ----- -----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1항, 제22조제1항----- -----

이 건 태 의 원 안	
현 행	개 정 안
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 2항을 위반하는 행위 2.3. (생 략) ② ~ ④ (생 략)	----- -----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박성훈의원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5(거래대금의 예치) ① <u>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지급한 거래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u> ② <u>예치기관의 장은 통신판매중개자가 거래 대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③ <u>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거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 1. <u>소비자가 재화등을 수령한 경우</u> 2. <u>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해당 기간이</u>

박성훈의원안	
현행	개정안
	<u>경과하기 전에 소비자가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이하 “분쟁조정등의 결과”라 한다)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거래 대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대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u>

박성훈의원안	
현행	개정안
	<u>거나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u> <u>1. 소비자가 거래 대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u> <u>2. 소비자가 거래 대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u> <u>3. 소비자가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u> <u>⑥ 예치기관의 장은 소비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분쟁 조정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거래 대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거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거나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u> <u>⑦ 예치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동의를 받아 거래 대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부터 10</u>

박성훈의원안	
현행	개정안
	<u>일 이내에 거래 대금을 소비자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u> <u>⑧ 그 밖에 거래 대금의 예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u>

김용민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u>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이하 “별도 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u>

백혜련의원안	
현행	개정안
<u>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11. (생략) ③ ~ ⑤ (생략) <u><신설></u>	11.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u>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의 보호)</u> <u>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u> <u>1. 신탁</u>

백혜련의원안	
현행	개정안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재화등의 대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백혜련의원안	
현행	개정안
	<u>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⑦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u> <u>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u> <u>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u> <u>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 <u>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u>

백혜련의원안	
현행	개정안
	<u>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u> <u>⑨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여야 한다.</u> <u>⑩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u> <u>1.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u> <u>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정보</u> <u>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u>

백혜련의원안	
현행	개정안
	<u>유사한 정보로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응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⑪ <u>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u> ⑫ <u>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u> ⑬ <u>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재화등의 대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재화등의 대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재화등의 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삭 제></u>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u>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u>	

백혜련의원안	
현행	개정안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백혜련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③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	

백혜련의원안	
현행	개정안
<u>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u> <u>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u> ④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거나 제8조 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소비	

백혜련의원안	
현행	개정안
<u>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⑧ <u>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⑨ <u>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u> ⑩ <u>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u>	

백혜련의원안	
현행	개정안
판매업자”로, “제37조제1항제3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본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 ----- ----- -----. 1. ----- ----- ----- ----- -----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2항----- -----

백혜련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생략) ② ~ ④ (생략)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u>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u> 제45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u>소비자피해보상보험</u>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45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백혜련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u>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u> 4. <u>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 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자</u> 5. <u>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을 체결한 자</u> 6. <u>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 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 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u> 7. (생 략) ④ ~ ⑧ (생 략)	<삭 제> <삭 제> <삭 제> 7.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운영석의원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 보호)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에 별도관리하는 대금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되거나 소비자에게 반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대금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하여 청구권이 있되, 이 법에 의해 적법하게 청약이 철회되거나 재화 등을 반환한 소비자가 우선하여 청구권이 있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운영석의원안	
현행	개정안
	<u>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⑥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u> <u>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u> <u>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u> <u>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 <u>⑦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u>

운영석의원안	
현행	개정안
	<u>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u> <u>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u>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 ----- ----- ----- -----.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1. ----- ----- ----- ----- ----- -----

운영석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20조의4, 제22조제1항-----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임미애의원안	
현행	개정안
<u>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11. (생략) ③ ~ ⑤ (생략) <u><신설></u>	----- ----- ----- ----- ----- 11.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u>제20조의5(재화등의 대금의 보호)</u> <u>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u> <u>1. 신탁</u>

임미애의원안	
현행	개정안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재화등의 대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미애의원안	
현행	개정안
	⑦ <u>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u> <u>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u> <u>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u> <u>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 ⑧ <u>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u>

임미애의원안	
현행	개정안
	<u>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u> <u>⑨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여야 한다.</u> <u>⑩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u> <u>1.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u> <u>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정보</u> <u>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통신판매중</u>

임미애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생략) 1. ~ 3.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도	<u>개회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⑪ <u>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회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u> ⑫ <u>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u> ⑬ <u>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재화등의 대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재화등의 대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재화등의 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

임미애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불구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u>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 ③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u>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u> ④ 제2항에 따른 <u>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필요한</u>	----- ----- -----<u>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u>----- -----.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사유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u>----- ----- ----- ④ -----<u>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u>----- -----

임미애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⑧ (생 략) ⑨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⑩ (생 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⑤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⑩ (현행과 같음)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 ----- ----- ----- -----. 1. ----- ----- ----- ----- -----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

임미애의원안	
현행	개정안
2. (생략) ② ~ ④ (생략)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u>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u>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2. <u>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u>----- ----- ----- -----